

옛 大學의 風俗誌

—우리 옛 大學의 發達史와 風俗誌(完)—

丁 淳 睦

(嶺南大 教育學科)

우리 옛 大學의 發達史와 風俗誌

1. 옛 大學의 發達史(上) ; 高麗 이전
 - 1) 고구려의 太學
 - 2) 백제의 博士 제도
 - 3) 신라의 國學
 - 4) 고구려의 國子監
2. 옛 大學의 發達史(下) ; 朝鮮時代
 - 1) 國立大學 : 成均館
 - 2) 民立大學 : 精舍와 書院
3. 옛 大學의 風俗誌
 - 1) 高麗시대의 教育風俗誌
知貢舉 · 座主門生制度 / 居接과 夏課
 - 2) 朝鮮시대의 國立大學 風俗誌
大學 캠퍼스 / 寄宿舍生活 / 食堂儀禮 / 大學自治
(齋會 · 捲堂 · 儒疏...) / 服飾과 關戲 / 科擧(試驗) 不正
 - 3) 民立大學, '書院'의 教育風俗誌
講 · 講會 · 講儀 · 講規 / 儒會와 書院懸牌
 - 4) 맺는 말

이곳에서의 風俗誌란 대학의 문화와 사회를 통한 生活史라는 뜻이다. 대학 문화의 면면한 전통은 선비의 삶을 규율하는 지적 분위기이면서 그들의 생동하는 삶의 박동이기도 하였다. 서구 문물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물결에 의하여 民族心性에 일시나마 잠복된 우리 精神史의 水脈이

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만이 아니다. 이제 옛 大學精神의 문으로 들어가서 단절된 옛과 이제를 이어보기를 한다.

1. 高麗時代의 教育風俗誌

1) 知貢舉와 座主門生制度

과거의 試官인 知貢舉가 되는 일은 文臣으로서 일생의 영광으로 생각되었다. 시관으로 뽑히면 그는 합격자 발표(放榜) 뒤에 兩府(門下省 · 中樞院)의 官員을 초청하여 '三日宴'을 베푸는 것이 관례였다. 知貢舉는 자기의 掌試 아래 배출된 급제자들과는 '座主 · 門生'이라는 일생을 통한 사제 관계를 맺게 되고 그 恩義가 매우 심중하였다. 掌試者를 '學士'라 일컬었으나 급제자는 자기들 시관을 '恩門' 또는 '座主'라 부르고 스스로는 '門生'이라 하였다. 榜이 나면 學士(知貢舉)는 門生(급제자)을 거느리고 옛 스승(座主)에게 나아가 拜禮하고 집으로 모셔와서 3代學緣(座主 · 學士 · 門生)간의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이를 <學士宴>이라고 불렀다(高麗史, 권 75). 그리고 좌주와 문생은 서로 부자 관계처럼 대하였고 심지어 사위는 내실 출입을 하지 못해도 門生에게는 허락되었으며 좌주가 죽은 뒤

에라도 門生이 不順하는 일이 있으면 그 夫人이 불러 面質을 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스승을 背反하는 일은 인격 파산으로 인정되었으며, '徒'를 옮기는 일은 철저히 금지되었다.

知貢擧를 여러 번 지낸 사람으로는 雙冀(3번), 王融(10번), 李縉(5번) 등인데 文士로 지공거를 한번 못하면 큰 유환으로 여겼다. 여말의 학자 益齋 李齊賢이 지공거가 되었을 때, 그의 부친(李縉)과 도친이 俱存하였었다. 그는 三座主를 초청하여 연회를 베풀었는데 장인 權溥(知貢擧)를 위시하여 趙簡(同知貢擧)·鄭儀(成均館試 試官) 등이었다. 이날 장모인 卞國夫人까지 참석하여 세상 사람들이 과거 지은 후로 일찌기 없었던 盛事라고 하였다(襟翁稗說).

座主의 문생 가운데서 지공거가 나오면 오서(烏犀)로 된 붉은 가죽 띠(烏犀紅鞵)를 물려 주었는데 이 풍속은 元宗 때에 생겼다. 平章事 任景肅이 그의 門生 柳璣이 同知貢擧가 되자 띠고 있던 '烏犀紅鞵'을 풀어 유경에게 돌려 주면서 "공의 문하에서 공과 같은 사람이 나오거든 전하라"한 일이 있는 뒤로 좌주·문생 사이에 이러한 紅鞵 傳受의 풍습이 생겼다(增補 文獻備考, 選舉考一). 李齊賢의 「襟翁稗說」에 나오는 지공거와 科場 모습을 보자.

시험 보는 날에는 날이 밝기 전에 知貢擧가 북쪽 의자에 앉아서 남쪽을 향하고 同知貢擧는 서쪽 의자에 앉아서 동쪽을 향한다. 監察은 왕명을 받들고 남쪽에 있는데, 將校는 旗를 잡고 틀 아래 나누어 선다. 學子가 모두 모이면 곧 문을 잠그고 貢院의 아전이 거자들의 이름을 불러서 두 곳으로 나누어 수용하고 동시에 나무를 새워 시험 제목을 써서 걸어 놓는다. 해가 한 낮이 되면 承宣(뒤의 承旨)이 金印을 받들고 오는데, 이 때 同知貢擧가 그를 맞이하여 틀 가운데서 서서 揖하고 나아가면 知貢擧는 북쪽 벽 뒤로 자리를 피한다. 承宣과 同知貢擧가 함께 마루에 올라 두 번 절하고 서로 안부를 물은 뒤에 또 두 번 절한다. 그 때 知貢擧가 나와서 북쪽 平床 아래 자리 위에 앉으면 承宣이 북쪽을 향하여 두 번 절하며 지공거가 답배한다(...).

아전이 學子들이 바친 試卷을 안고 나와서 올리면 承宣은 金印을 열고 試卷에 도장을 찍는다. 內侍가 黃封(병에 담고 봉합)한 醴(임금이 하사한 술)을 가져오면 지공거와 동지공거는 절하여 받고 절하며 마

신다. 승선이 돌아가면 동지공거는 틀에 내려가 읊하여 전송한다. 일찌기 文貞公 金堦가 지공거로 있을 때 忠正公 洪子藩이 승선이 되어 문에 버티고 서서 힐책하기를 "내가 왕명을 받고 金印을 받들고 왔거늘 지공거가 틀에 나와서 맞이하지 않으므로 내가 감히 들어가지 못하겠노라"하였다. 金堦가 말하기를 "承宣이 재상에게 나아가면 재상은 앉아서 맞이하는 법인데, 이제 내가 일어나 자리를 피하여 주는 것도 예법에 과하게는 하물며 틀에 내려가 맞이할 수 있으리오"하였다. 이렇게 서로 다투다가 洪子藩이 "시간이 장차 늦어집니다"하니 金堦는 부득이 계단을 내려 갔으나 한 층을 남기고 더 내려가지 않았다. 어느 사람이 "누가 옮은가"라고 묻기에 나는 "文貞公의 말은 先王이 정한 제도로써 대신을 공경하기 때문이요 忠正公의 말은 임금을 높이오자 한 것이다. 그의 임금으로 하여금 先王의 법을 본받아 대신을 공경하는 것 역시 임금을 높이는 길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任濡는 의종·명종·신종 3대 왕의 외숙으로 수상의 자리에 있었다. 그의 문생인 司成 趙沖이 지공거가 되어 문생을 거느리고 스승 任濡를 찾아 뵈었다. 李仁老가 시를 지어 다음과 같이 축하하였다.

"10년 동안 黃閣(재상이 일을 보는 관아, 中樞門 下省)에서 昇平을 돕고/세 번 春閣(과거, 본시험인 禮部試)를 열어 홀로 주관하였네/國士는 옛 國士에게 은혜를 갚고/문생이 이제 또 문생을 보았네"(「破閑集」, 十年黃閣佐昇平 三開春閣獨擅盟 國士從來酬國士 門生今復得門生).

崔滋의 「補閑集」에는 前記 任濡 家門의 座主 門生 예를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다.

良淑公 任濡의 말아들인 平章事 任景肅은 네 번 시험관이 되었는데 몇 해 지나지 않아 그의 문하에 限帶(서대: 물소 뿔로 만든 띠, 고관을 말함)를 찬 사람이 10여 명이나 되었다. 門生인 柳璣이 司馬試를 주관하여 합격자를 발표한 다음 날 찾아보니 任景肅은 太師로서 현직에 물러나 있었다. 재상인 두 조카와 樞密인 두 조카, 그리고 여러 從弟와 생질들은 모두 卿大夫로서 임금이 주관한 과거의 합격자들로서 모두 섬뜩 앞에 늘어섰다. 유경이 문생들을 거느리고 들어가 틀 아래 절하니, 任景肅은 마루 위에 앉았고 약공들은 풍악을 울렸다. 보는 사람들이 모두 하례하고 찬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

며 심지어 흐느껴 우는 이까지 있었다. 한림학사 林桂一이 시를 지어 다음과 같이 축하하였다.

“兩府(문하성과 추밀원)의 재상이 뜰 아래서 절하고/한 때의 뛰어난 인재들이 문앞에 모였네/桃李의 여러 가지들의 배어남을 바라보니/성대하며 희한한 일이 길이 전해지리로다”(兩府鈞台拜庭下一時英俊集門前 坐看桃李探枝秀 盛亦希聞繼世傳)

2) 居接과 夏課

崔冲의 文憲公徒는 많은 지공거를 배출하고 마침내 과거 급제를 독점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자극을 받은 이름난 儒臣들은 앞을 다투어 私塾을 열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12徒였다. 인종 이후 이들은 좌주문생 관계를 통하여 학벌을 형성하고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마침내 봉당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실질적인 嚆矢인 公徒教育은 辛旽의 지적처럼 ‘布列中外 恣其所欲’할 정도였다(『高麗史』, 恭愍王 17年條). 그러나 高麗 私學의 이러한 전통이 조선조의 민립대학인 서원에 물려준 전통 또한 엄격한 師生 관계이고 등문 관계이다.

‘夏課’는 피서 교육 또는 계절 학습이다. 文獻公徒에서 시작되어 十二徒 전체가 매년 여름철이면 山房(寺)을 빌어 詩會를 하거나 古人의 詩文을 외우기도 하였다. 夏課는 주로 송도 炭峴門 밖에 있는 歸法寺와 龍興寺에서 행해졌다(『補閑集』, 中卷). ‘接’ 또는 ‘居接’이란 夏課를 위한 집단 학습의 뜻이다. 이 때 同接은 물론 출세를 한 先輩들이 酒饌을 들고 와서 위로·격려하면서 등문 의식을 고취하기도 하였다. 하과가 파할때면 知製誥를 하여 시관으로 하여금 諸生의 能否를 평가하였다.

夏課의 교육 방법으로는 ‘射韻戲’라는 古詩暗誦의 시험이 있었는데 이 놀이에서 때로 僞作·借作이 나와서 座中을 끌리기도 하였다. 다음은 『補閑集』의 기록이다.

십이도의 冠童들이 여름철마다 山林에 모여서 공부하고 가을이 되면 헤어졌는데 龍興·歸法 두 절에 많이 갔었다. 어느 날 저녁에는 가을 하늘에 달이 명랑하여 서늘한 기운이 사람을 엄습하였다. 司直 威淳, 先達 李湛之, 玉和遇 등이 冠童 6,7인을 거느리고 歸法寺 돌 다리에 모여서 조그마한 술 자

리를 열고 옛 사람의 운을 써서 시를 읊었다. 이담지가 읊기를 “여름 더위는 바람이 쓸어 가고/가을 뜻은 달이 품고 오도다”(夏炎風掃去 秋意月含來)라 하였더니 威과 玉이 모두 잠적 놀라서 스스로 굴복하고 말았다. 이 시키는 林樞 선생의 시를 표절한 것인데, 함과 옥은 이를 알지 못한 것이다.

다음은 ‘對句’ 농기다. 한 사람이 “三公不換此江山”이라 읊으면 다른 사람이 곧장 이를 받아 “物外閑情一竿知”라 응대하는 식이다. 잘 된 對句는 ‘的對’라 하여 상을 준다. 다음으로 ‘刻燭賦詩’가 있다. 초에 금을 긋고 그 눈금이 다 타기 전에 시를 지어야 한다. 때로 종이 노끈을 매 달고 불을 붙여 그 노끈 금이 탈 때까지 시를 지어야 한다. 이를 ‘火繩作’이라 한다. 한 여름 이렇게 지은 ‘接’의 詩나 賦가 가을이 되어 夏課가 파할 무렵이 되면 ‘한 톱’이나 ‘두 톱’에 이르는 분량이 되기도 하였다. ‘톱’이란 땅에 쌓인 원고지 양이 얇은 자세로 ‘톱’까지 이르렀다는 표시이다. 이렇게 되면 同接들은 이를 慶賀하여 서로 ‘한 톱’ 내는 것은 물론이다. 접과 접끼리의 선의의 경쟁을 ‘接戰’이라 한다. 오늘날 ‘한 톱 낸다’라는 말과 ‘접전이 벌어졌다’는 말의 유래는 실은 教育淵源語인 것이다. 고려 시대의 이러한 接의 유풀이 조선 시대로 내려오면서 더욱 발달하였다. 夏課의 개강 파티를 ‘開接禮’라 하였으며 종강 파티를 ‘罷接禮’ 또는 ‘洗硯禮’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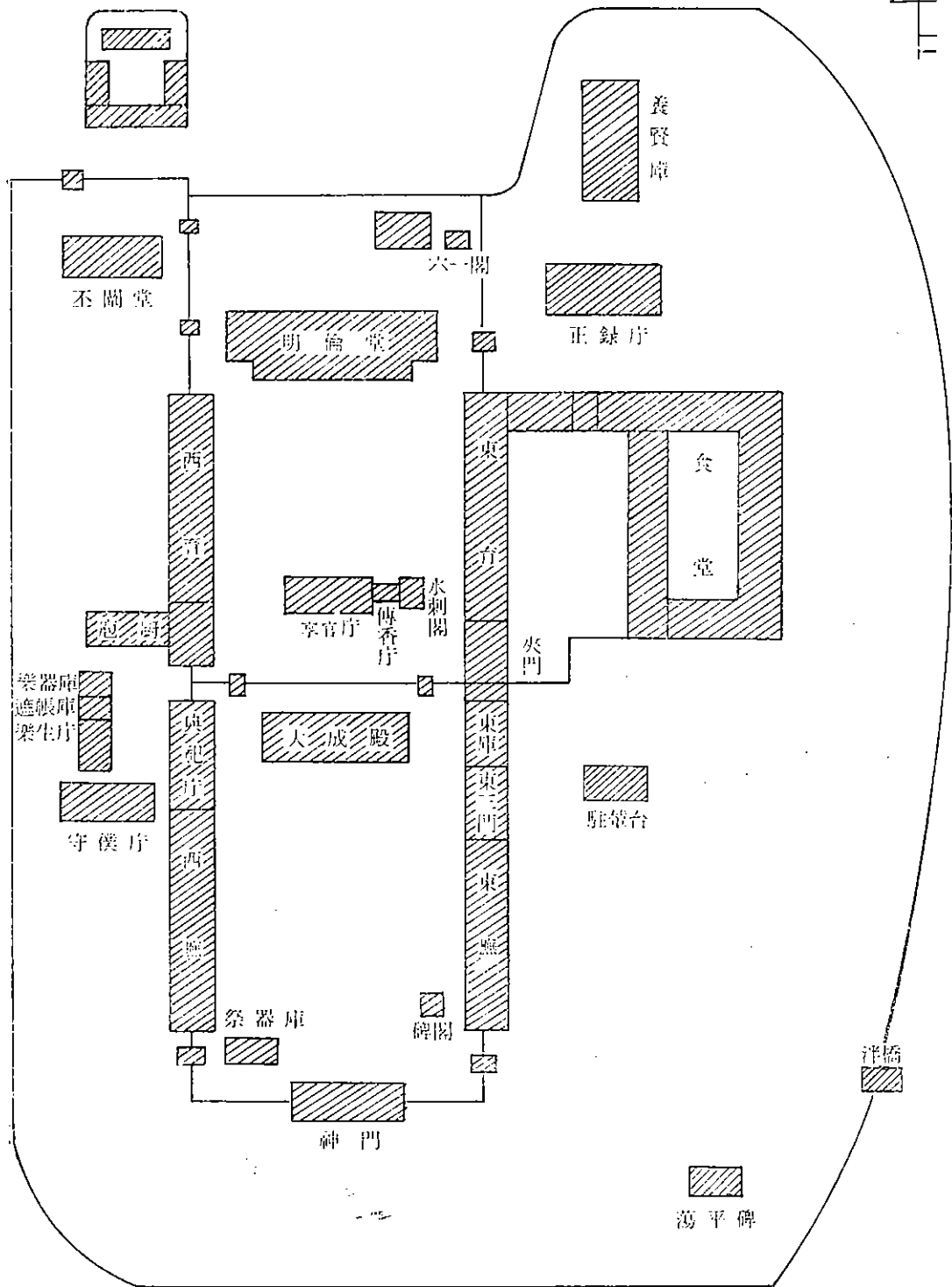
2. 朝鮮시대의 國立大學 風俗誌

閔鍾顯이 엮은 『太學志』와 尹愔가 지은 『泮中雜詠』(220首) 및 필자의 『韓國教育史資料大系 III, 〈近世編〉(①)』(한국정신문화연구원, 未刊)에 의거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학 캠퍼스

성균관의 건립 기록은 卞季良의 〈文廟碑文〉에 자세히 나와 있다. 성균관은 태조 6년(1397) 2월에 기공하여 이듬해 7월 7일에 文廟가 낙성되었고 이어 明倫堂이 문묘 북쪽에 세워져 廟學一體의 규모를 갖추었다. 정종 2년(1400)에 문묘가 화재를 당하였으나 태종 7년(1407)에 부

〈丑1〉 泮宮圖



구되었다. 임진란 때(1592)에 불탄 것을 선조 34년(1601)에 大成殿, 39년(1606)에 명륜당이 재건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성균관은 ‘泮水’가 東西南 3面으로 흐르게 하여 그 경계로 삼는데 이는 古制의 유풍이다. 옛날에는 지금의 명륜당 뒤 언덕에 숲이 우거지고 翫松亭이라는 정자가 있었다. 그 東北에 ‘養賢庫’가 있다. 나라 재물의 절반이 여기에 들어간다고들 하였다. 金字로 된 ‘明倫堂’이란 글씨는 朱子의 集字이고 처마에 걸린 글씨는 朱之菴의 글씨이다. 堂內에는 程伊川의 〈四勿箴〉, 朱子의 〈白鹿洞規〉, 陳茂卿의 〈夙興夜寐箴〉 등이 걸려 있다. 명륜당 아래로 東西上下齋는 기숙사이다. 東西 기숙사의 방은 모두 28개이다. 上齋는 生員·進士들이 거처한다. 이를 居齋生이라고 한다. 下齋는 幼學들의 거처이다. 성균관의 정원은 「經國大典」에서는 2백명이었으나 「續大典」에서는 126명으로 감소되었다. 上齋는 상급생이, 下齋는 신입생이 거처한다(下齋는 등서재 맨 아래 각 2間으로 각 20명이 거처한다). ‘大成殿’은 韓石峰(濂)의 글씨이며 이곳에 孔子를 위시하여 顏·曾·子思·孟子와 孔門十哲·宋朝六賢을 東西配享한다. 공자의 위패는 ‘大成至聖文宣王’이라 하는데 중국에서는 ‘至聖先師’라고만 한다. 대성전 아래로 東西廡가 있어서(동무에 55위, 서무에 54위) 韓中 儒賢의 위패가 모셔 있다(우리나라는 18 儒賢). 고려와 조선초에는 塑像이 봉안되었으나 成宗 무렵에 木主로 바뀌었다.

‘奉香廳’은 香官廳 또는 香大廳이라고도 부른다. 獻官과 執事들이 釋菜나 분향 때에 머문다. 성종 4년에 세워졌으나 임진란에 불탔다가 효종 4년에 복구되었다. 평시에는 生員·진사들이 分占하였다.

‘存經閣’은 도서관이다. 성종 6년에 건립하였는데 五經四譜 각 10권을 비롯하여 장서가 수만 권에 이른 적도 있었으나 正祖 때의 기록에 의하면 책이 거의 망실되어 서가가 비어있는 상태라고 하였다.

‘六一閣’은 영조 19년에 命建되었는데 大射禮 때에 사용하는 御弓과 御矢를 보관하는 곳이다. 六一이란 ‘射’가 六藝의 하나(射爲六藝之一也)라는 데서 나온 말이다.

‘正錄廳’은 교무실(처)이다. 學官職인 ‘學正·學錄’에서 나왔다. 성균관의 창건과 함께 세워진 것으로서 士論과 時論을 기록하는 輿論所이기도 하다. ‘玄冊’이라는 士論集議에 기록하였다. 士論을 이곳에서 일으켜서 朝士로서 그 피해를 입은 자가 부지기수였다는 것이다.

‘丕闕堂’은 명륜당 서쪽에 있다. 尼院을 헐고 세웠기 때문에 주자가 말한 “贊聖上丕闕大抑邪興正”의 뜻에 따라 명명하였다(宋時烈 記文). 丕闕堂에 ‘一雨齋’와 ‘關入齋’가 있는데 이는 비천당을 짓다가 남은 재목으로 지었기 때문에 ‘一舉兩得’과 ‘關異入吾道’라는 뜻을 취한 것이다. 비천당의 앞 뜰에서 과거를 보았는데, 試場이 一·二所가 열리면 이곳이 二所가 되었다. 丕闕堂 뒤에 ‘啓聖祠’가 있다. 이곳은 孔子의 아버지를 위시한 四聖의 文廟이다. 춘추 제향한다. 비천당이라는 글씨는 宋時烈이 썼고 계성사의 額은 영조 어필이다.

‘食堂’은 동재의 동쪽, 정록청의 남쪽에 있다. 식당의 문은 등서로 각기 나 있고, 사단은 모두 軒이며 창문을 내었다. 東西軒은 등서재의 식당이고 北軒은 당상관이 앉는 자리며 南軒은 南班儒生(庶族)의 자리이다. 식당의 남쪽 벽 아래 있는 下叢臺는 3층으로 반듯하게 돌을 쌓고 때를 입혔다. 이곳은 謁聖科의 武科 試所가 열릴 때 국왕이 親臨하는 곳이다. 그리고 泮橋 못미처 있는 ‘蕩平碑閣’은 영조의 御筆로 “周而不比乃君子之公心 比而不周寔小人之私意”(도나지 않고 원만한 것은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요, 어긋나고 원만하지 못한 것은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라 쓰여 있다.

‘泮村’은 大學村이다. 여기에는 주로 성균관 소속의 노비(泮奴·泮人)들이 산다. 때로 入齋하지 못한 館生들이 하숙하기도 하였다. 泮村의 큰 길을 경계로 하여 東西泮村으로 나누어진다. 東泮村 언덕 위에 ‘四賢祠’가 있었다. 이곳은 불의에 항거하여 높은 氣節을 보여준 중국의 四太學生(西晉의 董養, 唐의 何蕃, 宋의 陳東과 歐陽澈)을 기리던 곳으로 英祖 원년에 세워졌다. 東泮村 큰 길가에는 병자호란 때에 ‘五聖十哲’의 위판을 남한산성으로 옮긴 성균관의 守僕, 朴潛美·鄭信國 등의 旌門이 있었다. 泮村人은 대

개 고려 國學에 소속되었던 노비들의 후손들이다. 일찌기 安珦이 국학 부흥을 위하여 私奴婢 百口를 바쳤는데 이들 泮人은 安珦을 ‘옛 상전’이라고 추모하여 泮을 씌고 그의 忌日이면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安珦의 자손들이 성균관에 입학하면 “이 분이 우리 주인이다”라고들 하였다 한다. 泮人들에게 국가에서는 쇠고기 專賣權을 주어 ‘懸房’이라는 푸줏간을 경영하게 하였고 때로는 궁중의 나례나 산대놀이외의 배우로 출연시켰다. 〈泮中雜詠〉에 의하면, 그들 泮人은 “말소리가 개성 사람과 같고 여자가 곡을 할 때는 마치 노래를 부르는 것 같고, 남자는 옷 매우 새가 매우 사치스럽고 헝기가 있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泮人의 館婢 소생은 성균관의 齋直이 되고, 他婢 소생은 胥吏가 되었으며, 재적이 장성하면 守僕이 되고 그 나머지는 ‘才人禾尺’으로 일생을 불우하게 지낸 특수 신분 계층들이었다.

2) 大學生活 ; 寄宿舍生活

옛 대학생은 완전 국비 장학생이고 장학금과 일용품의 공급은 물론, 전원 기숙사에 수용되었다. 기숙사(齋)와 식당은 대학 생활의 중요한 생활 공간이다.

기숙사는 동서재로 나뉘어 28 개의 방으로 되었다. 방 하나는 매 2 칸이다. 동재의 제 1 실은 ‘藥房’이고 그 다음이 ‘右一房’, 그 다음이 ‘掌議房 : 학생회장실’, 그 다음이 ‘進士間’, 그 다음을 ‘下一房’, 그 다음이 ‘下終房’, 그 다음을 寄齋生이 거처하는 ‘下齋’라 부른다. 서재의 제 1 실을 ‘西一房’, 그 다음은 東齋와 같다. 유생들이 입학하면 친한 사람이 있으면 그와 함께 거처한다. 유생의 거처는 東西齋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때로는 泮村에 기식하거나 享官廳에 기식하기도 하였다. 기숙사에서는 장구나 바둑을 금지하였으므로 놀려면 향관청이나 반촌으로 나가야만 했다. 그리고 上齋生은 下齋에 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를 ‘齋體’라고 한다.

東西齋에 각기 房色掌을 둔다. 그는 심부름하는 齋直을 감독한다. 기숙사 안에서 선배가 새로 들어 온 후배를 육보이는 ‘面資’이 있었다. 선배가 후배를 면책하고자 하면, 齋直을 시켜 대

신한다. 재직들이 후배의 방으로 몰려 가서 함부로 성명을 부르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이른바 ‘新來侵虐’을 하는 것이다. 선조 2년에 李珣가 상소하여 이러한 폐단을 금하도록 주청하였으나 그치지 아니 하였다. 이는 고려 말기부터 권문세가의 자제들이 少年登科하여 기고만장, 버릇없는 행실을 뜯어 고치려는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나 선비 사회의 禮敬에 어긋나는 행위였다.

새로 생원 진사가 入學하면 相揖禮를 한다. 掌議를 비롯하여 齋會의 좌중은 신입생이 뜰에 들어서면 대청에서 모두 기립하고 守僕이 ‘某榜生員·進士某’라는 쪽지를 돌린다. 이 때 서기(曹司)가 뜰에 내려가揖하면 신입생은揖答하고 曹司를 따라 마루에 올라 학생회장(掌議) 앞에 선다. 이 때 守僕이 “齋直이唱하면揖禮를 행하되 모름지기 땅에서 한 치 떨어지게 하여行禮를 매우 공손하게 하실지라”라고 원다. 곧 이어 재적이 ‘揖’이라고 소리 높이 창하면, ‘코가 땅에 닿도록’(去地一寸) 읊한다. 그 뒤 色掌·堂長의 순으로 예를 올린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食堂에 참석할 자격을 얻는다. 신입생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유래가 여기에 있다.

상음례를 마치면 守僕이 다시 신입생에게 “그대가 만약 職名(朝士의 지위)이나 庶名(庶出의 신분)이 있으면 公事(자치 행사시의 士論)에 참여할 수 없소이다”라고 한 다음 나이를 물어서 차례(序齒)대로 앉힌다. 이 차례를 어기면 벌한다. 生員·進士는 합격 발표(放榜) 후 3일 뒤에 반드시 文廟에 謁聖하게 되어 있다. 이 날 掌議는 新來를 맞아 상음례를 행하는데 인원이 가장 많아 大相揖禮라고 불렀다. 이 때 守僕은 ‘草榜册’(급제자 명단 사본) 위에 ‘揖’자를 써서 참석 여부를 기록하였다. ‘揖’자는 곧 입학 허가이고 식당 참석권이다.

기숙사생에 대한 공급은 養賢庫에서 맡아서 식사 제공은 물론 일용품을 모두 官給하였다. “每一員一日飯米二升 價米一升 點心米三合”·“日醬二合 石首魚一介 鹽一合…”(「太學志」, 卷七) 이외에 每朔에 기름 값으로 사람마다 15錢을 分給하였다. 그리고 매년 10월이면 각 방에 창호지와 도배지, 화로와 요강, 세수 대야, 약탕관 등을 나누어 주었다. 유생이 병이 나면 약방문에 따라

약을 지어 주었으나 인삼이나 우황 등은 제외된다. 병이 위독하면 泔村으로 내보내고 죽으면 관급으로 治喪하여 본가로 返柩하며 齋生은 물론 齋直까지 부조하였다. 메달 壯紙 百束, 靑黃筆 百枝, 墨 百笏을 지급하였으며 과거 때에도 紙筆墨이 지급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 역시 후대로 내려올수록 박해졌는데 이는 국가 제정의 고갈과 下吏들의 농간 때문이다. 俗諺에 “進士방에 불 때듯 한다”는 형식주의는 성균관 下吏들의 농간을 두고 유래된 말이다.

〈學令〉(국초에 제정되었다고 하나 出處가 不明하다. 다만 『增補文獻備考』에 실려 있을 뿐이다)에 실린 齋中生活의 모습을 뽑아 적으면 다음과 같다.

- 메달 초하루에는 모든 학생이 冠帶를 갖추고 文廟에 나아가 절한다.

- 매일 학생은 명륜당에 나아가 교수(學官)에게 揖禮를 행한다(복이 한 번 울리던 차례대로 뜰에서 읊례하고 등서재로 마주하여 네 번 읊하고 자기 재로 들어간다). 이 때 학생들은 교수에게 日講을 청하고 上下齋에서 각기 한 사람을 뽑아서 주어진 대목을 읽는다. ‘誦’을 받은 자는 歲抄에 회수를 誦考하여 과거에 합제한다. 式年에 독서 회수가 〈不道〉이던 별을 받는다.

- 복이 두 번 울리던 독서한 책을 가지고 각기 교수에게 나아가 먼저 ‘論難辨疑’(디스커션)하고 새로운 교수를 받는다. 독서는 다독에 힘쓰지 아니 하고 정독한다. 항상 四書五經과 諸史만 읽고 莊子·老子·佛經이나 雜類百家子集 따위는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를 어기면 벌한다.

- 학생으로서 성현을 논하기를 좋아하지 아니 하고 高談異論을 하거나 조정을 비방하거나 財賂를 商論하거나 酒色을 談說하거나 권세에 아부하여 버술을 꾀하는 자는 벌한다.

- 학생으로서 오륜의 죄를 범하고 節行을 잃어버린 자는 誦議하여 복을 울려 이를 논란한다. 심한 자는 예조에 알려 중신토록 學館에 들이지 못하도록 한다. 재주를 믿어 스스로 교만하거나 권세를 앞세워 自貴하고 부자임을 내세워 自矜하거나 연소자로서 어른을 업신여기고 아랫 사람으로서 윗 사람을 凌辱하고 사치를 숭상하고 웃치례를 다른 사람과 달리하고 巧言令色으로

남에게 아침하는 자는 퇴학 처분(黜齋)한다.

- 여행을 자주하여 국고를 낭비시키고 受業하지 않고 襲述하지 않고 讀誦을 하지 않거나 길가는 데 말을 타거나 通禁을 어긴 자는 벌한다.

- 메달 초 8일과 23일에는 귀가하여 의복을 세탁하도록 한다. 그러나 그날 활 쏘기, 장기·바둑 두기, 사냥 놀이, 낚시질 등을 일삼으면 벌한다.

- 길에서 師長을 만나면 躬身拱手하여 길 왼편에 서서 師長이 騎馬過行할 것을 기다린다. 그때 혹 몸을 숨기거나 낮을 가려 行禮하지 않는 자는 벌한다.

- 새벽에 복이 한 번 울리던 자리에서 일어나고, 이른 아침에 복이 두 번 울리던 의관을 整齊하고 단정하게 앉아 독서하고 복이 세 번 울리던 식당에 나아가 등서로 상면하여 차례대로 앉는다. 식사가 끝나면 다시 차례대로 나오되 이를 어기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자는 벌한다.

- 학생으로서 조행이 뛰어나고 재주가 출중하며 時務策에 통달한 한두 사람을 해마다 齋會에서 선출하여 교수에게 추천하고 예조에 申報하여 擢用케 한다.

3) 食堂儀禮 ; 圓點節目

대학 식당은 다만 식사하는 장소만이 아니라 출석 점호(圓點)와 선비 예절을 닦는 자리이다. 따라서 생활의 엄격한 儀節이 있기 마련이었다. 〈津中雜詠〉과 「太學志」에 있는 食堂 風景은 다음과 같다.

- 식당에는 泔隸 한 사람이 食堂直이 되어 食鼓(東齋 제일 윗방(藥房) 西窓 밖에 메달려 있었다)를 친 다음 食券을 가지고 ‘到記’를 받는다. 각 방의 齋直(사환)은 자기 방의 차례에 맞춰 到記를 받는다. 食鼓가 울리고 난뒤 兩齋의 負木(불복하니 4인이 있음)은 기숙사를 돌면서 ‘庭揖’을 외쳐댄다. 학생들이 다 모이면 마주 서서 負木이 ‘揖’이라 외치면 揖하고 식당에 들어간다. 식당에는 相揖禮가 없다.

- 식당에 들어갈 때에는 生員은 東門을 통해서 東軒으로 들어가고 進士는 西門을 통하여 西軒으로 들어가 齒順(나이 차례)으로 앉는다. 東西下齋生도 自己軒에 들어가 生員·進士 밑에 앉

는다. 庶出의 生·進은 南軒에 든다. 이를 南班이라 칭한다(幽序는 중요한 座次 문제이다. 孝宗 9년에 黨色別로 分座한 적이 있어 당시 大司成 曹漢英이 파면되기까지 하였다).

• 食卓은 없고 그 대신 麻布를 편다. 이를 ‘典布’라고 부른다. 식당 가득히 학생들로 차서 겨우 一條布를 펼 정도만 남기 때문이다. 학생 각자에게 여덟 그릇씩 놓인다 (① 밥 한 그릇, ② 국 한 그릇, ③ 간장 한 종지, ④ 김치 한 보시기, ⑤ 나물 한 접시, ⑥ 소금절이 좌반 한 접시, ⑦ 생나물 한 그릇, ⑧ 젓(醃)한 접시가 기본 메뉴이다).

• 平項市에 紅圍領을 입은 館吏들은 식사 때 北軒에 서서 供饌하는 것을 재촉하고 首奴輩들은 분주하게 檢飭한다. 食母·菜茶母·魚塵들이 떠들썩한 가운데 식당에 참석하였다는 증표로 到記를 한다. 이것은 圓點(300 점이 차면 과거에 나간다)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到記冊은 우물 ‘井’자로 그려 한 사람씩 성명을 그 한 칸에 기입한 것으로서, 기입한 다음에 수결(花押)을 한다. 班首에서 曹司에 이르기까지 다 쓴 다음에 下色掌이 ‘몇 분(分)’이라고 통계한다.

• 식사는 ‘勸飯’이라 칭하면 수저를 들고, ‘進水’라 하면 송충을 들고 ‘退床’이라 하면 상을 물린다. 그리고 ‘起坐’라 부르면 파한다.

• 나라의 제사 날(國忌日)에는 食堂直이가 ‘某朝(王)忌辰’이라 써서 東西堂에 들고 다닌 다음에 素饌을 든다. 이 때 어들 대신에 두부, 젓갈(醃) 대신 미역국(麩)을 준다. 여름 북 더위(三庚日)에는 朝官과 같이 頒氷이 있다. 저녁 식당 때 주먹만한 얼음덩이 한 개씩을 나누어 준다. 북 더위에도 식당에서는 부채질을 할 수 없다.

• 일단 식당의 ‘典布’가 퍼지면 다음에는 典布를 넘어갈 수 없다. 부득이 빠져나갈 일이 생기면 식당직으로 하여금 典布를 칼이나 가위로 파르게 한 다음에야 나올 수 있다.

• 하루에 한 번 식당에 참석하면 원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반드시 朝夕을 進參하여야 一點이 된다. 3백 점이 차면 다시 計點을 하지 않고 과거에 나아가게 한다.

• 總長(大司成)이 식당에 참석하면 北軒에 앉고 典籍이 그 옆에 앉는다. 식사가 시작하기 전

에 東西堂을 순시하고 床을 받고 ‘起坐’를 부른 다음에 나간다.

• 초하루와 6일에 ‘大別味’가 있었다. 각자 먹고 싶은 것을 청하여 큰 그릇에 담아 나온다. 그러나 正祖 이후로 大別味 대신 8文錢으로 대신 하였다. 매달 3일과 8일에는 ‘別佐飯’이 있어 불고기(炙)가 나왔다. 그러나 양이 적어서 有名無實의 대명사로 ‘별좌반’이라 하였다. 그리고 寒食과 秋夕을 제외한 正朔·上元·三月三日·端午·初伏·流頭·七夕·九月九日·冬至 등 節日에는 別供이 있었다. 別供 때는 太平盤에 소담스레 차렸으나 이 역시 조선 후기에는 넉넉잡은 돈으로 떼었다(초복 날에는 개고기 한 접시, 중복에는 참외 한 개, 말복에는 수박 한 개가 특색이었다).

• 원칙적으로 점심은 없다. 그러나 불 釋奠 뒤부터 가을 석전까지 나온 적이 있었다. 대신 점심 값으로 錢 2文이 주어졌다.

4) 大學自治; 齋會·捲堂 등

국립대학인 성균관은 그 관학적 성격에 비하여 학문적 자유와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自由性과 自律性을 유지하였다. 특히 학생 자치 활동면에서는 거의 완벽한 자율성을 구사하여 士林公論의 진원지로서 또는 國脈振作的 요람으로서의 역할이 三司의 기능을 압도하는 경우마저 있을 정도였다. 일찌기 퇴계가 성균관 대사성이 되었을 때 ‘學校 風化之源 首善之地, 士子 禮義之宗 元氣之寓’(학교는 교화의 근본이고 모범을 보이는 곳이며 선비는 예와 의의 근본이고 으뜸가는 일이 깃드는 곳)라고 설파하였듯이 국가의 右文政治는 언제나 성균관의 유생 우대 정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들의 자치 활동은 선비 기질의 함양을 위한 문교 정책의 당연한 결과이며 선비들의 삶의 자세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때로는 성균관 유생들의 정의감이 政爭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며 黨論黨色の 편파적인 수단으로 동원되기도 하였다. 성균관 학생들은 그들의 자치 활동을 통하여 官人學者의 길을 수련할 기회가 주어졌으며 정치 현실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등 잠재된 압력 단체로 작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

가 권력 기관은 대체로 가급적 온건한 수용 정책으로 대처하려고 하였으나 학생들의 지나친 현실 참여에 대하여는 제재를 가하기도 하였다. 조선 시대의 강력한 군주 체제 아래서 양반 관료 계층이 국왕의 지나친 惠制를 견제할 수 있었던 것은 젊은 시절 대학에서 닦았던 자치 능력의 발휘에서 온 것인지도 모른다.

이에 그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 본다.

齋會는 성균관의 학생회이다. 모든 활동이 자치적으로 이루어진다. 齋會의 임원을 掌色이라고 하는데 그 구성은 掌議(학생회장)·上色掌·下色掌을 東西齋에서 각 1인씩 도합 6인을 뽑는다. 掌議는 기숙사생의 領袖로서 모든 학생 활동이 장의에 의하여 지휘 통솔되었다. 門地와 學行이 출중한 京儒 가운데서 뽑히(이는 집권 계층의 자제를 뽑는다는 뜻이다), 東西齋에는 掌議房(학생회장실)이 따로 있어서 다른 사람은 감히 이 방에 거처하지 못한다. 「太學志」에 의하면, 掌議制度는 宣祖 12년(1579)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고려 시대 國學까지 소급되는 것 같다. 英祖 40년(1764)에 〈齋規〉를 고쳐 掌議의 자격을 “四祖에 顯官이 없는 鄉儒 가운데서 천거한다”고 개정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는 정치적 영향권을 벗어난 在野士林의 公平性을 기대한 것이었다. 이른바 英祖시대의 蕩平策의 하나인 것이다. 그러나 正祖 시대에 李明徽라는 朝官이 노론의 영수였던 尤庵 宋時烈을 斥疏한 사건이 일어나자 大學에서 李明徽에 대하여 아무런 討罪가 없자, 이는 掌色들의 선출이 잘못된 까닭이라 하여 옛 규칙대로 노론계의 임원 선출로 환원되고 말았다. 탕평책은 대학 학생 자치회 임원에도 적용되었으나 東齋의 掌議와 色掌은 少論 중에서, 西齋의 장의와 색장은 老論 중에서 뽑고 南人은 철저히 제외되었다.

掌議의 후보(出代)는 반드시 전임이 후임을 천거하는 것이 規例였다. 즉 時任 掌議가 前任 掌議의 의견을 물어 公薦하게 되는데, 전임 세 사람이 ‘謹悉’이라는 글자로 추천을 해주어야만 ‘完薦’이 되고 한 사람이라도 ‘謹悉’을 써 주지 않을 경우에는 ‘敗薦’이 된다. 이렇게 「완천」이 된 사람은 피선거권자 명부(薦册)에 올려 擬望(후보자)으로 등록되는 것이다. 幹事格인 上色

掌은 前輩 가운데서 뽑고 下色掌은 신입생(新榜) 가운데서 가려 뽑았다.

掌議가 성균관에 들어올 때의 威儀는 자못 성대하였다. 守僕들은 미리 泮橋(泮橋)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迎拜하여 모셔 오는데, 東西房의 色掌 4인은 두 줄로 늘어서 執杖하여 인도하고 齋任房과 齋直 7, 8명은 뒤따르는데 용모를 단정히 하고 의복을 화려하게 꾸민다. 당시 벼슬 아치가 아니면서도 이처럼 ‘前呵後擁’하는 일은 장의가 泮宮에 들어올 때뿐이었다. 장의가 泮門에 들어서면 儒巾으로 고쳐 쓰고 掌議房으로 가는데 모든 학생은 창문을 닫고 목을 움추린다(閉門縮首). 드디어 장의방 앞에 이르던 齋直은 그제서야 큰 목소리로 “창문을 열라”(開窓門)고 외친다. 학생 회장의 존엄은 이처럼 엄숙하였기에 대학 자치회의 권위 또한 스스로 엄정하게 된 것이다.

모든 齋中의 公事は 齋會에서 장의의 주재 아래 이루어졌다. 장의가 齋會를 열고자 하던 守僕를 시켜 諸生을 속히 모이라고 先聲을 낸다(齋直들이 明倫堂 뜰 槐樹 아래 나와서 “開坐 아뢰오”하고 소리친다). 이 소리가 그치면 兩齋의 負木들은 각기 그들의 齋舍 앞에서 다시 ‘開坐’를 高聲 咏唱하고 西齋廳 위에 자리를 편다. 諸生은 이곳에서 나이 차례에 따라 북쪽을 상석으로 하여 西向으로 무릎 꿇어 앉는다(跪坐). 이윽고 守僕이 掌議를 맞아 오는데, 이 때 齋直은 버루匾을 들고 앞서 인도한다. 守僕이 먼저 ‘起坐’하고 구령하면 諸生은 일제히 기립하고 掌議는 회의장 머리 말(上頭)에 東向하여 諸生과 마주 서서 서로揖하고 나서 자리에 앉는다. 그 옆에 色掌이 앉는다. 堂長은 齋中에서 가장 나이 많은 자(班首)로부터 나이 순으로 약간 명(1, 3, 5, 7 명)을 정하고 曹司는 逆齒順으로 가장 나이 젊은 사람으로 정하되 堂長의 수와 같게 한다. 모든 公事(회의 진행)는 掌議가 발의한다. 守僕이 그것을 가지고 먼저 色掌에게禀하고, 이에 色掌이 이의가 없으면 擧袖(찬성 표시)한다. 이러한 순서는 堂長도 마찬가지다. 色掌과 堂長이 擧袖하면 守僕은 그것을 諸生에게 布告한다. 掌議의 발의는 대부분 이의 없이 통과되었으며, 때로는 守僕의 威嚇로 擧袖가 강요되기도 하였으

므로 諸生의 발언권은 봉쇄되었다고 하겠다. 더 의논할 公事가 없으면 장의는 ‘罷坐’할 것을 선포한다(이 때 역시 齋直이 “과좌 아뢰오”를 三唱한다). 그런 뒤 일제히 일어나 相揖禮를 하고 끝난다. 諸生이 齋會에 무단 결석하면 ‘到記’의 예에 따라 黜齋의 벌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직 공무원(朝士)이나 庶出의 생원·진사는 참석할 수 없었다.

儒罰은 성균관 학생회의 自治法律이다. 이는 儒士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朝士에게도 해당되었다. 대표적인 儒罰으로는 儒籍(靑衿錄)의 삭제이다. 광해군 때 鄭仁弘이 晦齋와 退溪를 문묘에서 출향시키자는 疏를 올리자 그를 대학의 靑衿錄에서 삭제한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따라서 이 儒罰의 시행과 해제는 대학생의 특권의 하나이다. 따라서 총장인 大司成은 물론 국왕까지도 선불리 간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朝官의 削籍은 관리의 진퇴가 대학생의 수중에 놓이게 된다는 폐단이 있다고 하여 숙종 때부터 문체시 되다가 영조 때에 와서는 「續大典」에서 禁斷되었다.

學内の 儒罰은 ‘永削付貲’·‘永削’·‘永損’ 등으로 나뉘는데 처벌의 대상자와 죄명을 罰紙에 써서 장의와 색장이 서명 花押(사인)한 뒤 西一房의 벽 위에 내다 건다. 특히 罪罰이 큰 경우에는 ‘鳴鼓送出’한다. 이는 食鼓를 떼어와서 齋直이 북을 치면서 泮橋가 울리도록 당사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죄인을 따르게 하여 내쫓는 학교 추방이다. 이러한 學生法廷은 公的인 효능이 인정되어 그 始末이 大司成과 齋任들에게 즉시 통보되었다.

諸生發論은 학생 개인의 의견으로 어떠한 공사를 發論하고자 하면 식당 모임에서 守僕을 불러 자신의 發論을 兩班首(堂長)에게 보낸다. 堂長들이 좋다고 인정(停當)하면 이를 諸生에게 전하다. 이러한 諸生發論은 가벼운 벌칙에 해당하는 일이 많다. 예컨대 상급생으로서 하급생을 벌할 경우이다. 諸生發論을 거쳐 하급생의 과실이 있으면 ‘幾日食損’(출석 정지)이 발의된다. 이때 齋任(장의와 색장)의 승인이 있어야 시행됨은 물론이다.

儒疏는 斯文有事(大義名分에 관계되는 일)나

討逆 등 중대사가 국가에 발생하였을 때 성균관 학생들이 내는 의견서이다. 이 儒疏야말로 성균관 자치 활동의 白眉이다. 대의명분을 지키고 시비곡직을 준별하는 대학생의 기상을 표현하는 현실 참여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일단 儒疏가 掌議나 諸生에 의하여 발의되면 학생은 일치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疏를 올릴 때에는 齋會에서 疏頭·疏色·製疏·寫疏 등의 疏任을 선출한다. 이를 ‘大議事’라 한다. 疏頭는 衆望에 의하여 천거하되 세 번 사양한 뒤 취임한다. 疏頭가 상좌에 앉고 曹司가 掌議의 구술에 따라 ‘大議事記’를 쓴다. 첫 머리에 疏頭의 성명을 쓰고 다음에 疏色 두서너 사람을 쓴다. 그 뒤 製疏·寫疏의 이름을 쓰고 끝에 ‘某日 封章’이라 쓴다. 疏의 내용은 製疏가 맡고, 淨書는 寫疏가 맡는다. 이러한 다음 疏文(大議事記)을 下齋의 掌議를 불러 四學을 비롯하여 方外의 유생들에게 傳達하도록 한다. 수 많은 儒生이 앞다투어 疏廳으로 名帖을 보내와서 ‘正論’에 동참코자 한다. 그들의 이름을 疏文 뒤에 列書하여 花押(手決)하는데 때로는 그 명단이 수백 장에 이르렀다. 疏가 다 이루어지면 예절하여 呈疏하기 전에 讀會(讀疏라 함)의 절차를 거친다. 소를 봉함하여 함에 넣고 紅探로 쓴 다음에 泮人을 시켜 명륜당으로 나아가 읽는 행사이다. 이 때 유생들은 명륜당 뜰 아래 列立하여 경청한다. 그 뒤 疏行이 시작된다.

疏行이 시작되고, 일단 疏行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들리면 행차가 지나가는 길은 철시한다. 疏行이 성균관에 출발하기 앞서 兒房使丞으로 하여금 시민들이 지나갈 길을 청소하게 하고 그곳을 泮人을 앞세우며 疏頭가 疏函을 따라 길가운데로 걷고 掌議와 疏任이 그 뒤를 따르며 그 뒤에 대학생이 東西齋로 갈라 천천히 행진하는데 모두 巾服을 갖추었다. 대학생의 뒤에는 四學 儒生이 學隸들에게 4개의 靑衿錄楨를 짊어지게 하여 앞세우고 掌色의 인도로 뒤따른다.

疏行이 지나갈 때는 비록 大臣이라 하더라도 감히 騎馬하고 지나갈 수 없다. 만일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兒房使丞으로 하여금 그를 불러 꾸짖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 하인을 불러어다 곤장을 친다. 疏行이 대렬에 이르면 정문 앞에 朱

卓을 세우고 그 위에다 疏函을 놓고 班을 지어 連坐한다. 그 뒤에 四學 儒生이 역시 4개의 청금록 책들 앞에 놓고 연좌한다. 그 뒤 疏를 대궐 정문의 御路를 통해 들여보내고 疏頭는 夾門을 통해 들어가서 政院에 바치고 나온다. 疏에 대한 국왕의 批答을 듣지 않고서는 연좌를 풀지 않는다. 때로는 며칠씩 기다리면서 依慕을 치고 식당을 依設하고 장기전에 대비한다. 왕의 비답이 내리면 즉시 讀批人을 정하고 읽고 나서 優答이던 ‘데모’를 풀고, 만족할 만한 것이 못되면 다시 상소할 것을 합의하여 즉시 齋會를 연다. 이렇게 거듭 상소하였으나 국왕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批答이 내리지 않을 경우에는 마침내 捲堂으로 들어간다.

捲堂은 지금의 등명 휴학이다. 捲堂은 空館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끔 혼용된다. 대학생들이 집을 싸고 제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철저한 시위 행위이다. 권당이 식당 출입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공관은 자진 퇴학의 청원이다.

권당이 일어나면 守僕은 지체 없이 大司成이나 同知館事에게 보고하고 즉시 入津하여 학생들을 명륜당에 소집하여 그 연유를 묻고 開讞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所擬를 진술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草記를 작성하여 왕의 비답을 청한다. 이에도 불응하면 마침내 예조판서나 대신을 보내 타이른다. 이도 저도 효과가 없으면 方外의 유생을 임시로 모집하여 食堂成員 3인을 채우려고 한다. 空館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文廟에 나아가 四拜禮를 행하여 하직을 아뢰고 館을 나가는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면 大司成 이하 모든 館員과 예조의 堂上과 郎官들이 入津하여 東西齋에 分處하여 문묘를 守直하는 한편 국왕은 承旨를 보내어 宣諭한다. 그리고 諸生의 학부형을 등원하여 就館하도록 설득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공관이 몇 달이나 걸리는 경우도 있었으며 朝鮮史에 기록된 공관의 기록은 부지기수이다. 대학생들이 일단 空館을 결행하게 되면 일이 해결되기 전에는 다시 들어오기 힘든 名分이므로 대개 정부는 유화 정책으로 회유하거나 정치적인 후퇴를 기하여 해결하였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일은 명종 6년(1551)에 발

생한 僧 普雨를 罰誅하라고 청한 공관이었다.

5) 服飾과 關戲

服飾: 성균관 학생의 복색은 초기에는 儒巾·藍衫을 착용하였으나(「太學志」, 〈服色〉) 「經國大典」에 의하면, 대학생의 복장은 교내용과 교외용으로 나누어 정해졌다. 교내용은 儒巾(緇布巾이라고도 함)에 藍衫을 하고 나들이를 할 때는 靑衿團領에 갓을 쓰도록 하였다. 英祖 17년에 영의정 金在魯의 고증에 의하여 유생들이 文廟에 들어갈 때에는 靑衣를 착용하고 식당과 齋會 때에는 紅衣를 착용하도록 하였다(「增補文獻備考」). 그 뒤 英祖 22년에는 명나라 제도를 도입하여 ‘襖頭·襪衫’制를 채택하였다. 白衣는 國喪때가 아니면 착용이 금지되었다. 선비를 ‘靑衿’이라 부르는 것은 藍衫 靑衣를 표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생 복장의 기본 색상은 푸른 옷이었다고 보여진다.

關戲: 「燃藜室記述」(十二)과 「慵齋叢話」(九)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매년 여름과 겨울에 중이이다 ‘關’字를 써서 模擬朝廷을 연출하였다. 공자를 王으로 모시고 東·南·中·西의 ‘四學’으로 顏子(復聖公)·子思(述聖公)·曾子(宗聖公)·孟子(亞聖公)의 四聖을 封國으로 삼아 마치 제후와 천자의 관계처럼 上下齋의 학생을 百官의 職에 銓注하여 앉히는 놀이다. 학생들의 이러한 ‘대궐의 벼슬놀이’(關戲)에서는 현실의 정치처럼 頒敕나 遣使의 예도 행하였으며 ‘모의 과거’도 시행하였다. 과거는 四學의 유생으로 하여 試題에 따라 製述토록 하였으며 성격을 매겨서 ‘天場及弟’를 뽑아 唱榜하고 때로는 ‘政革’를 大畧하여 大成殿 뜰에 大字報를 써 놓기도 하였다. 太宗 시대에 대학생들의 이러한 ‘궐회’를 본 어느 내시가 왕에게 달려가 성균관 유생들이 ‘모반’을 꾀한다고 告變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태종은 “이것은 유생들의 옛 풍속으로 그 연원은 오래되었다”(此儒生古例 其來已久)고 웃으며 답하였다. 아마도 고려 성균관의 출신인 태종 스스로가 겪은 일이 있었던 것 같다. ‘궐회’는 장차 立朝하여 官員이 될 학생들의 정치 학습의 일종이었다. 그러나 〈泮中雜詠〉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正祖 연간에는 이미 사라

진 풍속이 된 듯하다.

試驗不正(科擧不正): 성균관 유생은 중국적으로 과거를 준비하려는 집단이다. 그리고 그들의 과거 부정은 공공연히 자행되었다. 대리 시험, 시험지 바꿔치기, 모범 답안 몰래 갖고 가기, 試官의 매수, 試監의 매수, 시험 문제의 사전 탐지와 누설, 시장 안에서의 相通(컨닝) 등 해아리기 어려운 부정 방법이 자행되었다. 그 밖으로도 永不叙用·停擧·徒·流·杖刑 등이 있었지만 科擧는 후대에 내려올수록 더욱 심하였다. 이러한 과거 부정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도가 강구되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錄名: 擧子들은 錄名所에 출두하여 四祖單子와 品官의 신원 증명서인 '保單子'를 접수한 뒤 都目과 대조하고 그 신원의 하자가 있는가를 조사한 다음 錄名帖에 기입하고 名紙(답안지)에 踏印을 받는다.

名紙: 擧子들은 시장에서 名紙를 구입한다. 명지는 下品의 搨練紙여야 하지만 京華子弟들은 上品인 咨文紙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답안지(本草)에다 직접 채점하는 小科가 더욱 심하였다. 명종 8년(1558) 이후 上品紙를 사용하는 자는 停擧를 명하였다.

皮封: 擧子는 試紙의 卷首에 본인과 四祖(父·祖·曾祖·外祖)의 관직·성명·본관을 5行으로 쓴 다음에 그 위에 풀로 종이를 붙여 봉한다. 이를 秘封이라 한다. 풀로 붙인 종이의 上·中·下 세 곳에 '謹封'이라 써서 녹명할 때도 장을 받는다. 이를 外打印이라 한다. [大科에는 製文과 皮封에 字號를 매긴 뒤 皮封을 割去草)하고 製文을 朱筆로 옮겨 쓰고(易書) 이 사본(朱을 가지고 채점한다.

試所: 科場에 전용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漢城府·禁衛營·三軍府·禮曹·成均館·四學 등이 사용되었다. 試所의 주위에 가시나무를 둘러 치는 것이 관례였다.

禁亂軍: 의금부 도사나 假都事 2명이 임명되어 병조에서 차출한 군졸을 지휘 순찰하였다. 또 枷具를 試門 가까이 대령시켰다가 범인이 생기면 枷具를 채워 의금부로 압송한다.

搜檢官: 忠義衛·族親衛의 관원으로 임명하여 응시생이 책을 지니고 들어가는 것을 단속하

였다.

書吏·軍卒: 응시자들이 협잡하기 위하여 서리를 매수하고 자신의 하인이나 노복을 군졸로 바꿔치는 일이 있었다. 발각되면 파면시키고 代立시킨 자는 流配하였다.

入門: 入門官은 試日의 未明(알성시는 1일 전)에 試所에서 擧子들이 모이면 錄名冊을 보면서 呼名點入시킨다. 이 때 搜檢官이 수험생의 옷과 상자 속을 뒤져 책이 있는지를 조사한다. 場外에서 적발된 자는 一年式的 停擧, 場內에서 적발되면 二年式的 정거에 처한다. 입장이 끝나면 入門官은 6尺 간격으로 整坐시킨 뒤 밖으로 나가고 禁亂軍이 때문에 자물쇠를 채운 다음 장내·외를 순찰하면서 잡인의 접근을 금한다. 試場에 접근하는 자가 있으면 의금부로 넘겨 水軍에 充定한다.

答案禁令: 科文에는 일정한 정식이 있어서 이를 어기면 실격된다. ① 楷書해야 한다. ② 莊老佛家의 문자를 쓰거나 荀子, 陰陽書·稗說 따위는 인용해서는 안 된다. ③ 色目(당쟁)에 관한 것은 써서는 안 된다. ④ 임금의 諱字를 써서는 안 된다. ⑤ 策文은 먼저 試題를 옮겨 쓰고 初·中·終段의 虛頭에 '臣伏讀'의 세 글자를 써야 하는데 懸題한 자획이 다르거나 한자라도 빠뜨리면 안 된다.

封齋·易書: 收卷이 끝나면 墨卷한 순서대로 10장씩 묶어서 軸을 만들고 '千字文'의 순서에 따라(天軸, 地軸, 玄軸, 黃軸...) 字號를 매기고 作軸한 試卷이 봉미관에게 넘겨지면 그는 시권의 피봉과 製文의 두 곳에 字號를 매기고 또 그 勘合을 그린다. 이것이 끝나면 피봉과 製文을 분할하여, 피봉은 껍데기에 넣어 다른 곳에 보관하고 製文은 謄錄官에게 넘긴다. 등록관은 30~50명의 書吏를 지휘하여 朱筆로 製文을 書寫시킨다. 이것은 試官이 필적으로써 누구의 답안지인지 알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시관이 朱草를 가지고 채점하다가 의심나는 곳이 있으면 場外의 謄錄官에게 의뢰하여 本草와 대조하는 경우도 있다.

探點: 채점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마루에 장막을 쳐 上·下 試官이 나누어 앉는다. ② 下試官들이 시권을 나누어 채점하고(初考)入

格試卷이 있으면 試卷(朱草)에 점수를 기입하지 않고 공책에 기록한 뒤 上試官에게 넘긴다. ③ 上試官은 初考入格試卷을 다시 심사하여 시권에 점수를 기록한다(再考). ④ 出榜할 때 上·下 試官이 모여 상시관이 시권에 기입한 점수와 하시관이 공책에 기록한 점수를 대조하여 맞지 않은 것이 있으면 上·下 시관과 의논하여 다시 점수를 정한다(合考). 채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해가 질 때에는 하루 初·中場의 시권을 80장, 終場의 시권은 70장, 해가 짝을 때에는 初·中場의 시권은 60장, 終場의 시권은 50장 이상을 채점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채점은 '上·中·下·二上·二中·二下·三上·三中·三下'의 9등으로 하여 三下를 '1分'으로 하여 入格으로 하고 그 아래를 다시 '次上·次中·次下·更·外'의 5등으로 나눈다.

出榜한 뒤 입격 시권 중 1등 시권은 政院에 보내 御覽하게 하고 나머지는 예조에 보관하였다가 본인에게 돌려 주었다. 落幅 試卷은 場中の各司 하인 군사에게 나누어 주거나 公家의 경비로 쓰고 때로는 변방 군사의 방한용 紙衣 또는 襦衣로 만들어 보내기도 하였다.

3. 民立大學, '書院'의 教育風俗誌

1) 講·講會·講規

講은 서원만의 고유한 교육 형식은 아니다. 전통 교육의 교수 형식으로서 기본적인 양식이다. 그러나 성균관과 같은 制度教育機關에서 인간 교육의 이상에 맞는 '講'을 하였으며 '講會'라는 세미나가 어느 정도 수행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조선 敎育史上 15세기 무렵에는 관학이 진흥되어 성균관에 이른바 '三金'(金泮·金未·金球)과 같은 탁월한 교수가 있어 官學 아카데미즘 형성에 이바지 하였던 적도 있었으나, 土禍를 거친 뒤 16세기경에는 서원을 중심으로 하는 私學 아카데미즘이 울연히 일어나서 敎學의 주류가 書院講學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임진·병자란 이후 성균관과 서원의 대학 교육은 함께 그 탄력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講은 배운 글을 소리 높이 읽고 그 뜻(義理)을 問對하는 전통적인 교수 방법이다. 대개 旬

講·望講·月講 등으로 나뉜다. 講에는 背講과 面講이 있다. 배강은 암송 낭독이고 면강은 臨文 낭독이다.

講會는 특별 강의이다. 精舍나 서원의 講長과 函丈에게 「心經」·「近思錄」·「啓蒙」등 고급 교재를 교수받고 이에 대한 질의 응답을 전개하는 세미나이다. 퇴계는 陶山書堂이나 易東書院에서 이러한 강회를 여러 번 가졌다. 講儀는 강을 할 때의 儀節이고 講規는 그 節目이다. 강회의 기록이 '講會錄'인데 書院 記錄의 하나로 다수 전해지고 있다. 강과 강회 때에는 즉석에서 敎育評價를 하였는데, 대개 '通·粗·不'의 3단계 평가 척도로 하였다(丁淳陸, 「韓國書院敎育制度研究」, 1979).

講을 받는 데는 일정한 절차가 있다. 이것을 講儀라고 한다. 講會가 시작되기 전이나 끝날 무렵에 朱子の '白鹿洞規'와 '鄉約'을 낭독하는 것이 常例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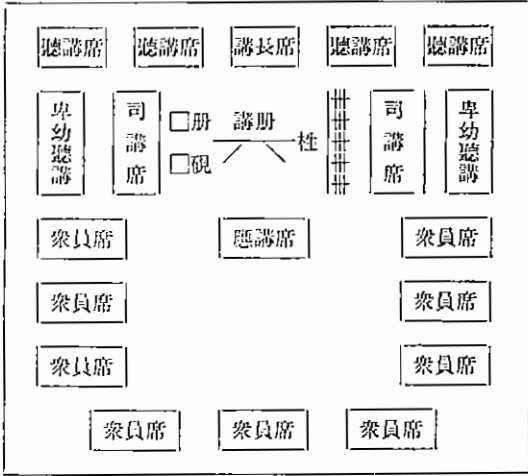
- 당번(直日)은 師席 앞에 책상을 갖다 둔다.
- 司講 1인은 東向을 하여 師席 오른 편에 또 다른 1인은 그 왼 편에 앉는다.
- 추점통(置籤筒)을 스승의 책상 위(또는 왼편)에 놓고 講을 할 책 세 권을 師席과 師講 2인의 책상 위에 놓는다.
- 講生을 차례대로 呼名한다.
- 지정된 講生은 師席 책상 앞으로 나아간다.
- 두 번 절하고 무릎을 꿇고 앉는다.
- 주어진 글을 읽고 질의에 응답을 한다.
- 끝나면 師席과 司講은 각기 '柱' ※(柱: 承講 書抽籤)을 성적에 맞게 헤아려 直日에게 알리

〈표 2〉 講席圖

設講座目圖(第一圖)

聽 講	司 講 讀 法	師 席	司 講 執 禮	聽 講
		講 生		
西 班 首 生 司 西 班 西 司	直 目		會 正	東 班 首 生 東 班 西 司
	三 西 階		三 階 階	

設講座目圖(第二圖)



고, 直日은 기록부에 이를 상세히 기록한다. 한 번 사용한 柱은 置籤筒에 넣는다.

- ‘考性’이 끝나면, 講生은 두 번 절하고 물러난다.
- 講을 마치면 執禮가 師席에게 나아가 講을 마쳤음을 아뢴다.
- 師席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諸生은 일제히 일어나서 師席을 향하여 함께 두 번 절한다.

대표적인 ‘講席’의 배치는 <표 2>와 같았다.

華西 李恒老의 「閩塾講規」와 「講規」는 講에 관한 짜임새 있는 저술이다. 이 중 <序誦>·<面講>·<饋食>·<行賞>·<講誡>·<罷講>의 순으로 약기하면 다음과 같다.

序誦 : 講長이 먼저 一篇을 읽고 聽講이나 衆員 가운데서 희망하면 읽게 한다. / 司講은 성명을 적고 읽은 篇名을 ‘講記’에 적는다. / 司禮가 제생 가운데 한 사람을 호명하여 應講토록 한다. / 應講者는 講席 앞으로 나아가서 揖하며 이에 강장은 坐揖한다. / 司禮가 講長 앞에 나아가서 講書本卷을 책상 위에 가려 올린다. / 강장이 一篇을 뽑아 誦할 것을 명한다. / 講生이 다 읽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강장에게 ‘疑義’를 請問한다. 司講이 이를 講記에 기록한다. 그리고 강사의 ‘講錄’에서 講義의 大旨를 기록한다. / 司禮가 課目을 選授한다. / 응강자가 강석에서 물러나 읊하고 강장이 이에 답한다. / 응강자가 제자리로 돌아온다. / 이와 같은 절차를 다른 한 사람이 반복한다. (...)/ 諸生의 進講이 끝나면 司禮는 주침통

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뽑아 강석으로 나오게 한다. / 응강자는 읊하고 뒤로 돌아 앉는다(背坐). / 講長이 一章을 뽑는다. / 응강자가 이 대목을 외운다. / 외우기를 마치면 다시 일어나 北向하여 앉아서 강장의 질문을 받는다. / 응강자가 供對한다. (글을 잘 지을 경우에는 墨義로 대신할 수 있다) / 강장이 講評한다. / 司講이 講記에 이를 收錄한다. / 司禮가 課目을 選授한다. / 응강자가 자리에서 물러나서 읊하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面講 : 司禮가 面講書冊을 정하고(書史나 先賢의 文集에서 前期하여 정한다) 이를 講長의 책상 위에 놓는다. / 강장이 諸生 가운데서 善誦者 한 사람을 앞으로 나오게 한다. / 한두 단원을 뽑아 읽게 한 뒤 거듭 질문한다. / 讀者가 제자리로 돌아간다. / 좌중에 질문자가 있을 것 같으면 앞으로 나오게 하여 질문처를 읽게 하고 질문한다(스스로 割錄하여 가지고 올 경우는 呈稟한다).

饋食 : 司禮가 進食할 것을 청한다. / 司設이 醬案과 研貝를 치우고 司籍이 서적을 치운다. / 司餼가 童蒙 2인을 거느리고 講長과 諸位 앞으로 進饌한다. / 제생이 會食한다. / 식사가 끝나면 다시 講設로 환원한다.

行賞 : 司禮가 行賞할 것을 청하면 司賞이 상을 받들고 司正의 오른쪽에 동향하여 앉는다. 講記에 의하여 音義가 俱通한 자 1인을 호명하고 강장 앞에 복면하여 꿇어 앉게 한다(2~3인이 될 수도 있다). / 시상하면 제자리로 돌아간다. / 行賞을 마치면 司賞은 ‘不通’자 1인을 호명하여 앞으로 불러 施罰한다(撻三度이다). / 행실이 바르지 않은 자 역시 벌하고 司講은 ‘罰籍’에 기록한다.

讀誡 : 司禮가 ‘講誡’를 청하면 司講이 나와서 높은 소리로 이를 읽는다(華西 講誡가 따로 있음). / 四孟朔會 때에는 다같이 <강계>와 <향약>을 읽는다. / 司禮가 한 사람을 추첨 호명하여 앞으로 나오게 하여 朱子의 <白鹿洞書院講規>를 읽게 한 뒤 제자리로 물러나게 한다.

罷講 : 司禮가 罷講할 것을 청하면 강장이 강석에서 일어난다. 모든 사람이 함께 일어나 강장에게 揖하고 강장이 이에 답음하면 곧 파한다(단약 강장이 不在하면 강장 자리에 ‘虛坐’를 만

들고 다른 곳에 司講 자리를 마련하여 그가 임시로 강의를 대행한다).

2) 儒會와 書院墨牌

앞에서 언급한 取士制度에 의하여 구성되는 儒林 집회가 곧 서원의 儒會이다. 이는 堂會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이곳에서의 의사 결정은 철저하게 민주적 의결 방식을 따르고 서원의 모든 임원 선출 역시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서구의 민주주의가 도입되기 수백 년 전(和自이나 政事岩의 故事를 기준으로 하면 천 수백 년 전이다)부터 儒林公議와 儒林公論은 ‘民主的’이었다. 儒會는 서원의 양대 기능인 ‘祭享’과 ‘講學’이라는 주된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한 보조 기능으로 출발하였다. 서원의 운영 문제를 비롯하여 향촌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적 문제(향약의 실시)는 물론 재야 사림들의 여론을 결집하는 정치적 의사 표시에 이르기까지 儒會의 역할과 기능은 광범위하였다. 그리하여 後期の 서원은 작게는 學派(說) 論爭의 전원지가 되고 크게는 黨色의 근원지가 되기도 하였다. 이른바 ‘淸議’라고 하여 반대 학파와 반대 당을 성토했던 通文을 남발하였으며 民草를 토색하기도 하였다. 서원의 성격이 차츰 재야 사림의 연합 전선으로 그들의 신분 지위를 영속화하고 경제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전락하기에 이른 것이다. 朴齊炯은 「朝鮮政鑑」에서 儒會의 폐단에 대하여 이렇게 적고 있다.

“당초에는 다만 道義를 강론하다가 차츰 조정의 政事를 평론하게 되었다. 한 사람이 먼저 외치면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며(衆口同聲) 檄文을 나라 안에 전하여 수십 일이던 다 돌려지는데 이를 ‘儒通’이라 한다. 조정에서 벼슬 하나를 除拜하여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의 기대에 흠족하지 못하면 論議가 비등하여 드디어 막혔으니 이를 ‘淸議’라고 부른다.”

서원에서 簡通 하나를 띄워 먹 도장을 찍은 다음 고을에 보내면 士族과 평민을 막론하고 반드시 수탈되지 않을 수 없었다. 불응하면 서원에 잡아다가 혹독한 형벌로 위협하였는데, 이러한 서원의 통문을 ‘墨牌’(까막 배자)라고 부른다. 서원의 커다란 도장은 印朱가 아니라 먹물로 찍어 내보내는 관례였기 때문이다.

‘淸議’란 본래 정치와 人事의 비위와 부정을 탄핵하고 시정하기 위한 公論이라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唐鑑」, 〈淸流議論〉), 이것이 차츰 사육과 私鬮에 악용되었으며 유생은 스스로 ‘淸流’라고 자처하여 갖은 비행을 자행하였다. 서원 가운데서도 가장 횡포가 심하였던 곳이 ‘華陽洞書院’이었다. 이른바 ‘華陽墨牌’가 내려지면 民官은 물론하고 전답을 팔아서라도 需錢을 봉납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私刑까지 당하기가 예사여서 실로 華陽墨牌는 협박장이나 다름이 없었다. ‘儒通’은 서원을 중심으로 하는 유생 사이에 돌리는 글이었으나 유림간에 반대파를 비난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다. 조선 숙종 이래 성행되어 드디어 국정을 좌우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컸다.

4. 맺는 말

이상 3회에 걸쳐 우리 옛 大學史와 그 풍속지를 약술하였다. 상하 천 오백 년의 시간과 서로 다른 유형에서 전개되는 폭 넓은 교육의 모습을 담기에는 지면이나 능력의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에 드문 敎育의 나라이고 교육의 슬기 또한 先進에 속한다. 착실한 대학사의 서술은 그 나라의 知性史의 제고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大學史는 文化史이다. 이 점이 편협된 교육 제도사나 교육사상사와 구별되는 점이며 아울러 선불리 손댈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하다. *